

IX 종교

1. 포교규칙(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를 말한다.

제2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포교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서류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나 조선의 사찰에 속하는 자는 제2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2. 교의(教義)의 요령(要領)
3. 포교방법

앞 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管長)이 포교관리자를 정하여 아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2. 교규(教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 방법
6. 포교관리사무소의 설치
7. 포교관리자의 성명과 이력서

앞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방법·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 방법 또는 포교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포교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포교자 명칭을 작성하여 이듬해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명칭에는 포교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조선총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인 경우 포교관리자를 둘 수 있다.

앞 항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둘 때에는 10일 내에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7조 제6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해서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따라 포교관리자를 둘 때에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제8조 종교의 포교에 종사하는 자가 성명을 변경하고 거주지를 이전하거

나 포교를 그만 둘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명칭과 소재지
3. 부지의 면적과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성명과 도면
4. 종교와 그 교파·종파의 명칭
5. 포교담당자의 자격과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와 그 지불 방법
7. 관리와 유지 방법

앞 항 제5호에 따라 포교담당자를 선정할 때에는 설립자 또는 포교관리자는 그 성명과 거주지를 갖추어 이력서를 첨부하여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조 제9조의 제1항 제2호,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10일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제12조 포교관리자와 조선 사찰의 본사(本寺) 주지는 각 그 소속 사찰,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 그 신도수와 그 해의 신도 증감수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 신고한다. 전 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조선의 사찰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경우에는 각 그 포교담당자가 신고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종파에 속하는 자 또는 조선 사찰에 소속



하는 자가 본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書)¹⁾를 첨부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이나 제10조를 위반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할 경우 종교유사단체로 판단되었을 때 본령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라 본령에 근거하여 적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19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는 폐지한다.

제18조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의 신고를 하거나 제3조의 인가 또는 제9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同條) 제1항 제2호의 사항, 본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사항, 아울러 포교담당자의 성명과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한다.

제19조 본령 시행 때 직접 종교 포교에 종사하고, 포교관리자를 두거나 종교의 용도로 제공하는 교회당·설교소·강의소와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2조와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

1) 원본의 사본

에게 신고한다.

앞 항에 따라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한 자는 본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2. 사찰령(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지(基址)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조 사찰의 기지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법(傳法)·포교·법요 집행 및 승니(僧尼) 거주 목적 이외에 이를 적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사찰의 본말(本末) 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本寺)에서 이를 정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찰에는 주지를 두어야 한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寺務)와 법요 집행의 책임을 맡아 사찰을 대표한다.

제5조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조물·고문서·고서화·기타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 규정한 것 이외 사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3. 사찰령시행규칙(1911년 7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제1조 주지(住持)를 정하는 방법, 주지의 교체 절차, 그 임기 중 사망, 기타 사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무(寺務) 취급 방법은 사법(寺法) 안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제2조 아래 기재한 사찰의 주지 취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광주군	봉은사(奉恩寺)
	수원군	용주사(龍珠寺)
	양주군	봉선사(奉先寺)
	강화군	전등사(傳燈寺)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法住寺)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麻谷寺)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威鳳寺)
	금산군	보석사(寶石寺)
전라남도	해남군	대흥사(大興寺)
	장성군	백양사(白羊寺)
	순천군	송광사(松廣寺)
	순천군	선암사(仙巖寺)
경상북도	대구부	동화사(桐華寺)
	영천군	은해사(銀海寺)

	의성군	고운사(孤雲寺)
	문경군	금룡사(金龍寺)
	장기군	기림사(祇林寺)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海印寺)
	양산군	통도사(通度寺)
	부산부	범어사(梵魚寺)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貝葉寺)
	황주군	성불사(成佛寺)
평안남도	평양부	영명사(永明寺)
	순안군	법흥사(法興寺)
평안북도	영변군	보현사(普賢寺)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乾鳳寺)
	고성군	유점사(楡岾寺)
	평창군	월정사(月精寺)
함경남도	안변부	석왕사(釋王寺)
	함흥군	귀주사(歸州寺)

앞 항 이외 사찰의 주지 취임에 대해서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제2조의 인가신청서에는 주지가 될 자의 신분, 연령, 수행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 주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재임을 막지는 않는다.

제5조 주지가 범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그 주지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사법(寺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1주일 이내에 그 사찰을 떠나야 한다.

제7조 주지는 사찰에 속한 토지·삼림·건물·불상·석조물·고문서·고서화·범종·경전·불기(佛器)·불구(佛具), 기타 귀중품의 목록서를 작성하여 주지로 취임한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재산에 증감이동(增減異動)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제7조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부칙>

본령은 사찰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각 본사(本寺)에서는 본령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사법(寺法)의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령이 시행될 때 주지가 없는 사찰은 관행에 따라 본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하여 그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4.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1911년 8월 17일 관통첩 제243호)

제1조 조선 각 본사는 연합하여 강학 포교를 행하도록 함.

제2조 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사무소를 둔.

제3조 연합사무소에 위원장 1명, 사무원 약간 명을 둔.

제4조 위원장은 본사 주지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위원장은 연합사무를 맡음.

제5조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함. 사무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

제6조 회계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원 3명을 둠. 감사원은 본사 주지의 호선에 의하여 정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감사원은 매년도 회계의 상황을 심사하여 이를 주지회의에 보고함.

제7조 연합사무를 결의하기 위하여 주지회의를 둠. 주지회의는 각 본사 주지로 조직하여 매년 1월 경성에서 개최함. 위원장은 주지회의 개최 기일을 정하여 미리 주지에게 통지함.

제8조 아래에 기재한 사항은 주지회의의 의결을 경유함. 단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으로 임시 시급을 요하는 것은 한정해 두지 않음.

1. 본 제규를 변경하는 일
2. 연합사업에 속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하는 일
3. 경비의 징수 방법을 정하는 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주지회의 의장은 위원장으로써 이에 총당하고 그 결의는 출석 주지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정함.

제10조 본사 주지는 호선에 의하여 상치원(常置員) 7명을 정함. 상치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함. 상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제11조 아래의 경우 상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함.

1. 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결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중앙학림(中央學林)의 직원을 임명할 때
- 앞 항의 경우 상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음.

제12조 연합사찰과 그 말사 승려가 종교 등 필요한 학습을 받기 위하여



경성에 중앙학림을 설치함.

제13조 각 본사와 그 말사 승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 본사에 지방학림을 설치함. 단 사정에 의해 2개 사찰 이상이 공동으로 1개 학림을 설치할 수 있음.

제14조 중앙학림과 지방학림에 관한 학과 정도 기타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함.

제15조 연합사찰과 그 말사의 포교구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제16조 포교는 각 본사가 임명한 포교사가 이를 행함. 포교사는 중앙학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임명해야 함.

제17조 포교의 방법은 주지회의에서 이를 정함.

제18조 포교에 필요한 경비는 각 담임 사찰의 부담으로 함.

제19조 연합사업에 필요한 세입 세출은 매년도 예산으로써 이를 정해야 함.

제20조 연합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사찰의 부담으로 함. 단 지방학림에 필요한 경비는 각 본사의 부담으로 함. 앞 항의 경비는 각 본말사의 협의에 의하여 말사에 분담케 할 수 있음.

제21조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마침.

제22조 금전의 출납은 모두 명세(明細)히 장부에 기재하여 감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해야 함.

제23조 위원장은 매년도 결산을 하여 주지회의에 보고해야 함.

제24조 본칙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음

5. 경학원규정(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3호)

제1조 경학원(經學院)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며 경학(經學)을 강독하고 풍교덕화(風敎德化)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학원은 경성(京城)에 둔다.

제3조 조선총독은 각 도(道)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강사로 하여 경학원에 있도록 한다.

제4조 경학원은 매년 봄과 가을 2회 문묘(文廟) 제사를 거행한다.

제사는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 대제학이 거행하고 경학원 강사도 여기에 참석한다.

제5조 경학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대제학(大提學)	1명
부제학(副提學)	2명
제주(祭酒)	5명
사성(司成)	약간 명
직원(直員)	약간 명

앞 항 직원의 진퇴는 조선총독이 맡는다.

제6조 대제학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院務)를 총괄한다.

제7조 부제학은 대제학을 보좌하며 대제학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주는 위의 명을 받아 원무를 분장한다.

제9조 사성은 위의 지휘를 받아 원무에 종사한다.

위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에 종사한다.

제10조 경학원의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만 60세 이상의 강사로 공로 또는 덕망이 두드러진 자에게는 특별



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성 이외에 거주하는 강사로 경학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제11조의 수당과 여비액,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경학원의 직원과 강사의 수당·여비, 기타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경학원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기본 재산은 토지·건물·국채증권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 또는 은행예금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본 재산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 대제학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연도 전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의 추가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제학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그 연도 후 3개월 이내에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 2항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대제학이 정한다.

6. 경학원에 관한 건(1911년 8월 1일 조선총독부훈령 제65호)

경학원을 설립하는 취지는 규정(規程)이 보여주듯이, 문묘(文廟)의 제사를 모시고 교화를 돕는데 있다. 이에 따라 고덕독행(高德篤行)의 노인을 우대하고 유림을 존중하며 석학을 중시하는 미풍(美風)을 장려하는 데 머무르

지 말고, 나아가 이륜(彝倫)을 갖고 인심을 바르게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건대, 공맹(孔孟)의 길은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중심으로 실천궁행(實踐躬行)을 기대한다. 후세사도(後世斯道)를 주장하는 자가 때로 무위도식에 빠져 공론횡의(空論橫議)를 일삼는데 이른다면 그 여폐(餘弊)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번에 우리 천황폐하가 국고 25만원을 내리시어 경학원의 기금을 충당하게 하시는 성지(聖旨)의 넓으신 은혜에 감격해야 할 것이다. 경학원의 직원과 강사들은 헛되이 책을 읽고 제사를 받드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인리향당(隣里鄉黨)의 모범이 되어 그 폐단을 교정하고 미풍양속을 권장하여 일반 교화를 돕는데 열심히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1911년 8월 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內正毅)

7. 경학원의 원무(院務)에 관한 건

(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경학원은 그 창설 이래 바야흐로 2년이 되어 간다. 유림을 이끌고 풍교를 유지함에 자랑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이번에 원무(院務)를 더욱 확장하여 매달 반드시 경전을 강독하고 가을에 두 차례의 석존(釋尊)을 기하여 특별히 강연을 개최하며, 또 강사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도록 한다. 또한 원지(院誌)를 발간하여 한층 교화를 도울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한다. 직원은 이러한 뜻을 명심하고 시정 방침을 제대로 장려하여 스스로 민중의 모범이 되어 유림의 목탁(木鐸)이 되어 그 목적을 완수해야 한다.



억유림(抑儒林)의 요점은 경학을 강명(講明)하여 인륜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대개 본(本)을 잊고 말(末)을 따라 봉당을 결성하여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어찌 유학의 본지(本旨)이겠는가. 오늘날 옛날의 폐단이 남아 각각 분립하여 회(會)라 칭하고 교(教)라 부르며 은연중에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필경 공맹(孔孟)을 제일로 따르면서 그 말(末)을 달리 할 뿐이다. 그러나 경학원은 특별히 문묘(文廟)의 제사를 관장하고 유학의 중추로서 자리한 교화기관이다. 오늘 이후로 난립하여 소회(小會)를 경영하는 자들을 원무로 흡수하고, 일반 사람에게 따를 만한 곳을 알리도록 하여 정성을 다해 돕는 미덕을 베풀어야 한다. 경학원에 있는 자는 모름지기 책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잠심이륜(潛心彝倫)하고 유류(儒流)를 깨끗이 하여, 인심을 바르게 깨우쳐 국가에 공헌해 나가야 한다.

1913년 3월 1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內正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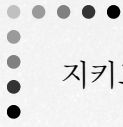
X 교육

1. 교육에 관한 칙어(1890년 10월 30일)

짐이 생각건대 우리 황조황종(皇祚皇宗)이 나라를 여실 때에 규모를 광활하고 원대하게 하시고 덕을 깊고 두텁게 세우셨노라. 우리 신민(臣民)이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억조일심(億兆一心)으로 세세(世世)에 그 미덕을 다함은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이니 교육의 연원도 또한 실로 여기에 있노라.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친구간에 서로 믿으며, 스스로 공손하고 검소하게 행동하여 널리 사랑을 베풀고, 학문에 힘쓰고 일을 배움으로써 지능을 개발하고, 인격향상에 노력하여 공익을 넓히고, 사회의 의무를 다하며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시하고 준수하며, 만일 유사시에는 충의와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여 천양무궁한 황운(皇運)을 도와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면 오로지 짐의 총량한 신민일뿐 아니라 또한 충분히 너희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하리라.

이 도리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이니 자손과 신민이 모두 준수할 것인 바, 이것을 고금을 통해 틀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국내외에 베풀어야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짐은 신민과 함께 삼가 명심하여 잘



지키고 행하며 모두 그 덕을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2.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

제1장 강령(綱領)

제1조 조선의 조선인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바탕을 두고 충성스런[忠良] 국민 육성을 본의(本義)로 한다.

제3조 교육은 시대의 추세[時勢]와 국민의 수준[民度]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교육은 이를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눈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전문교육은 수준 높은 학술기예(學術技藝)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인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신체 발달에 유의하여 국어를 가르치고 덕육(德育)을 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1년

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수준 높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식을 키워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12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13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 관립(官立)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 교원속성과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원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5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수준 높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부덕(婦德)을 길러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생활에 유용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제16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8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技藝科)를 설치하여 연령 12세 이



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가르칠 수 있다.

기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상업·공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실업학교를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나눈다.

제22조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23조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4조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과 입학자격에 관해서는 앞의 두 개의 조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를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5조 전문학교는 수준 높은 학술기예를 가르치는 곳으로 한다.

제26조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27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의 교과목과 그 과정·직원·교과서·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게재한 이외의 학교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부칙>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학교, 고등여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하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간주한다. 종래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실업보습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학교, 상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때, 조선총독은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에 관해 본령에 구속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교원심득(1916년 1월 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2호)

제국 교육의 본지(本旨)는 대부분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에 명시된 내용을 내지인이든 조선인이든 묻지 않고 동등하게, 깊은 배려에 기초하여 충성심 강한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제국은 개벽 이래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체(國體)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 신민들은 힘을 모아 선조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도와야 한다. 이는 실로 교육의 근본으로, 국가가 특별히 교육을 널리 시행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교육의 임무에 임하는 자는 항상 국민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여 특별히 아래 3개 조항에 유의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1조 충효를 바탕으로 삼아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충효는 인륜의 근본으로 신하의 지극한 충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근본에 기초하여 지극한 충정을 통해 비로소 백행(百行)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충성효순(忠誠孝順)하는 신하의 본분을 잘 아는 자는 일상의 업으로 삼아 충실하게 재산을 경영하고 근검하게 처신하여 국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임하는 자는 충효를 바탕으로 덕성을 함양하여 제국의 신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조 실용을 으뜸으로 삼아 지식기능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핵심은 실용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의 수요에 충당하는 데 있다. 만약 국민으로서 헛되이 공론(空論)을 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동떨어지고 일하는 것을 꺼리며 실행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입신하여 재산을 일구고 국익을 증진하여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에 임하는 자는 모름지기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길에 착안하여 유용한 지능 계발에 힘써 국가의 수요에 적응할 실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강건한 신체를 길러야 한다.

무릇 온갖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체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부강 역시 강건한 국민의 노력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신체가 허약하여 일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능히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할 것이며 제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의 임무에 임하는 자는 이에 유의하여 강건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상 3개 조항은 교육의 대강(大綱)이다. 무릇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질에 따른다. 국민의 질은 그 덕성과 지능과 체력 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교육인가 고등교육인가를 떠나서, 보통교육인가 전문교육인가를 떠나서, 항상 이 대강을 염두에 두고 온힘을 다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의 본지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래의 9개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학생의 성격과 환경에 순응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

교사는 우선 학생들의 성격과 환경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성격 및 환경이 어떤 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거나 유해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에 학생의 연령 및 체질·기풍·습관을 파악해 모두 교육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성격과 환경 외에 각 학생의 개성을 파악해 이에 따라 선도해야 하며, 나아가 좋은 의사가 병에 따라 적절히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교육만을 능사로 여기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도를 게을리 하면 주도면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2.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은 시대의 추세와 국민의 수준을 헤아려 이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헛되이 인습의 형식에 구속되거나 막연하게 일을 처리하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덕육(德育)·지육(知育)·체육(體育)에 각각 일정한 계획을 세워 주도면밀하게 고안하여 교육의 방법을 비교하고 헤아려 잘못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훈육(訓育)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에서는 국민적 성격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훈육에 힘을 쏟아 덕성 함양을 해야 한다면 학과 공부를 하면서도 실습을 하면서도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육에 유의하여 가르침에 힘써,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사람을 접할 때 관용을 지닐 수 있도록 부지런함과 질서를 중시하고 규율을 지켜 학업에 힘쓰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성실하고 인정 많은 성품을 가르친다. 국민의 본분을 다하는 인물을 가르치고 육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4. 통일된 교육을 하고 연마하여 그 효과를 축적해 학생들이 확실하게 배우게 해야 한다.

적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학습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계통에 따라 질서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각 교과목 간에 소통하여 통일성을 세워 산만하고 고립된 바를 없앨 필요가 있다. 각 교사가 교과목을 나누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 점에 주의하여 서로 연락을 하면서 협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일관된 맥락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식기능의 분량은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단 가르치는 지식은 때를 만나고 사물에 반응하면서 반복 훈련하여 효과를 축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학생들이 습득한 지능은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원숙한 통일성을 갖춰 자유롭게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가르칠 때에는 적당한 방안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게 하여 더 많은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의 향학열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가르칠 때에는 단지 지식 기능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학습의 방

범까지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실과교육에서는 실습에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이에 참여해서 근면한 습관과 노동의 재미를 알려야 한다. 이리하여 학생이 졸업을 하여 스승을 떠나도 유의도식(遊衣徒食)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 각자의 업무에 힘쓰는 기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6. 신체 단련에 유의하여 체조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자면 강건한 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발육에 따라 적당한 체조를 하고 계절에 따라 지면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운동·놀이를 장려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기력을 왕성하게 길러 추위와 더위·비바람을 막론하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졸업 후에도 스스로 운동을 하는 기풍을 길러 그 체질을 강건하게 다져야 한다.

7. 교사는 사랑과 권위로 학생을 대하며 항상 솔선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르침과 훈련에 능률하고 생기가 있어야 교육의 효과를 낳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봄과 같고 자애로움이 바다와 같으며, 사제 간의 친화를 도모하여 감화훈도(感化薰陶)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솔선하여 행동해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8. 교사는 성실한 지조를 갖고 항상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교육 사업이라는 일을 시작해 이 일을 영원히 하고자 한다면 교사는 교육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여기면서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종국의 목적을 향



해 용감히 매진하여 이 사업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조를 지켜야 한다. 또한 교사는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수양을 충분히 하고 더욱 발전하여 사업을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 항상 인격의 수양과 학문 연구에 활용하여 향상과 발전에 힘써 그 책무를 완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9. 교사는 동료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모형제와 향당(鄉黨)에 친밀감을 갖고 교화 해야 한다.

교육 사업이라는 관여해야 할 것이 많은 사업을 혼자 힘만으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교사는 동료와 친목을 다해 호의를 갖고 충고를 하고 선도를 하여 좋은 교풍을 만들어 최선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 밖에 교사는 부모형제 및 향당과 친목을 다지고 연대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교육 사업을 이루어가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선각이라는 소임을 스스로 다하여 교화하며 이끌어가야 한다.

교사는 제국 교육의 본지를 명심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강구하며 지극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이를 수행하여, 교육의 실적을 올리고 제국의 발전에 공헌을 해야 한다. 인생 백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지극 정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고, 노력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지극 정성과 노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충성 어린 국민을 육성하고 성지(聖旨)에 보답할 수 있다. 본 조선총독은 교육과 관련해 그 직에 해당하는 자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에 교사의 일상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제시하여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4. 교원심독에 관한 건(1916년 1월 4일 관통첩 제1호)

각 도장관 앞

이번 훈령 제2호를 통해 교원심독을 발표하였다. 조선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정(始政) 이래 조선교육령 및 기타 법령을 통해 규정하였으며, 때에 따라 기회에 따라 적지 않게 가르침을 내렸다. 최근 약 5년 동안의 성적에 비추어 볼 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관철하기에는 앞날이 요원하여 당사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엔 특별히 교원심독을 훈령으로 내려, 학교교원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상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그 근거를 더욱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도장관은 관할 공립과 사립 학교직원을 독려하여 본 훈령의 취지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가르침의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힘써라. 명에 따라 이에 통첩한다.

XI 경제기관

1. 한국은행조례(1907년 7월 26일, 법률 제22호)

제1장 총칙

제1조 한국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2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요지에 지점, 대리점을 설립하며, 다른 은행과 교통(交通)을 계약(締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점, 대리점을 필요로 할 때는 은행에 명령하여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한국은행의 존립시기는 설립등기일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 환(圓)으로 하고 이를 10만주로 나누어 1주의 금액을 1백 환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한국은행의 주식은 모두 기명으로 하고 한일 양국인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한국은행의 주식 중 3만주를 부담한다.



정부는 앞 항에 의해 부담하는 한국은행의 주식을 이권(離權)할 수 없다.

제7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본국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중역

제8조 한국은행에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9조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리(總理)한다.

총재에게 유고(有故)시에는 이사의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궐원할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대로 한국은행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한국은행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총재는 정부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백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로 선거한 2배의 후보자 중에서 정부가 임명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로 선임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제11조 총재와 이사는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은 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주주총회

제12조 통상 주주총회는 매년 2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총재가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전원이나 총주금(總株金)의 1/5 이상에 상당한 주주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가 앞 항 청구를 받았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그 소유주수(所有株數) 1주에 대해 1개로 한다. 단 11주 이상은 10주를 증가할 때마다 1개를 더한다.

제16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 이외는 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인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정관의 변경은 총자본의 반액 이상에 상당한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4장 영업

제18조 한국은행은 아래 업무를 경영한다.

1. 위체(爲替)·어음(手形),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평상시에 취인(取引)하는 제회사, 은행, 상인을 위한 수형금(手形金)의 징수
3. 위체, 하위체(荷爲替)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5. 제 임치금(任置金), 당좌대월감정(當座貸越勘定)
6. 금·은화, 귀금속, 제증권의 보호·임치
7. 지금은(地金銀)의 매매, 화폐 교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서 무담보 대부를 할 수 있다.

앞 2항 외에 영업 편의에 따라서 국채증권, 지방채권,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인가를 받아서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9조 한국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매수하거나 채무 관제(辦濟)를 위해 담보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이외에는 동산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20조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임치하고 그 출납에 관한 사무를 무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화폐정리사무와 국채 원리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21조 한국은행은 본법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단 정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은행권

제22조 한국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과 종류에 관해서는 정부인가를 받는다.

앞 항의 은행권은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언제라도 금화, 일본은행 태환권과 교환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할 시간동안은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 한국은행은 은행권 발행액에 대해 같은 액수의 금화, 지금은(地金銀), 일본은행 태환권을 두고 지불준비에 충당한다. 단 지은(地銀)은 지불준비 총액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앞 항 준비에 따르는 외에 한국은행은 특히 2천만 환에 한하여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이나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삼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앞 2항 외에 다시 은행권의 발행이 필요할 때는

정부인가를 받아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이나 상업어음을 보증으로 삼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1개년 5/100 이상의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은 공사(公私) 취인에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한국은행은 은행권 발행액, 지불준비에 관한 매주 평균액표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 은행권 제조, 발행, 손권(損券), 교환, 소각 등의 조치는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은행권 위조, 변조에 관계된 죄는 형법 위조지폐의 각 본조(本條)에 비추어 처단한다.

제6장 준비금과 납부금

제28조 한국은행은 매 영업연도 준비금으로 자본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금 8/100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게 하기 위해 이익 2/10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29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불입자본에 대해 연 12/100를 초과할 때는 한국은행은 그 초과액의 1/2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과 보조

제30조 정부는 한국은행 업무를 감독한다.

제31조 한국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부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한국은행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하고자 할 때는 정부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정부는 필요할 때 은행권의 종류, 발행액, 대부할인의 금액, 방법,



그 이자비율, 위체료, 정화준비(正貨準備), 보증준비에 관해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정부는 한국은행 영업상 본 조례 정관, 감독상 정부가 발한 명령을 배려하거나 공익을 해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제지하고 정상(情狀)에 따라서 역원을 해직할 수 있다.

제35조 한국은행은 정부명령에 따라서 영업에 관한 제반 경황(景況)과 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정부는 특히 한국은행 감리관을 두고 한국은행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7조 한국은행 감리관은 언제라도 한국은행의 금고, 장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 감리관은 감시상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한국은행에게 명령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과 경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수에 더할 수는 없다.

제38조 한국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서 연 6/100의 비율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소유주에 배당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한국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소유주 이외의 주식에 대해 매 영업연도에서 연 6/100의 비율에 이르지 않을 때는 정부는 창립 초기의 말일부터 5년간을 기한으로 하여 이에 도달할만한 금액을 보급한다.

제40조 정부는 한국은행을 창립할 때 그 영업비를 보조하기 위해 1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무이자로 대하(貸下)¹⁾한다.

앞 항 대하금은 대하일로부터 5년간 잉치 후 10개년 연부상환하

게 한다.

제8장 벌칙

제41조 한국은행은 아래 사범(事犯)이 있을 때 총재, 총재의 직무를 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를 1천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그 사범으로 이사분담업무에 관계될 때는 이사를 과료에 처하는 것도 역시 같다.

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례에 기재(記載) 없거나 정부 명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을 때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때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때
4. 본 조례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제42조 앞 조의 과료는 재판소명령으로써 이를 과(科)한다. 그 명령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부칙>

제43조 본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일체 사무는 일본정부에 위탁한다.

제4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제46조 창립 당초의 이사, 감사는 임기를 제외하고 제10조의 조건에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한다.

제47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한대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권리·의무를

1)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 등에 돈이나 곡식을 꾸어주는 일.

계승한다.

제48조 앞 조의 계승 전에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9조 제47조에 따른 계승과 동시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한대로 계승일의 보증준비에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무이자 20년 연부상환으로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부해야 한다.

2. 조선은행법(1911년 3월 28일 법률 제48호)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여 그 본점을 조선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지점,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레스펀던스(correspondence)’를 체결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점, 대리점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로부터 5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이를 10만주(株)로 나누어 한 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제5조 조선은행의 주권(株券)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한다.

제국 신민이 아니면 조선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6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주식 중 3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한다.

정부는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주식을 팔 수 없다.

제2장 중역(重役)

제7조 조선은행에 총재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둔다.

제8조 총재는 조선은행을 대표하여 그 업무 전체를 관리한다.

총재 유고시 이사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총재 결원이 생기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좌하여 정관이 규정한 대로 조선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 총재는 정부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사는 1백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한 2배수 후보자 중 조선총독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5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재와 이사는 어떠한 명칭으로든 다른 직무나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으면 여기서 제외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1조 정기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한 시기에 총재가 소집한다.

제12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총재는 앞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의 의결권은 한 주에 하나로 한다. 단 11주 이상은 10주가 증가할 때마다 하나를 더한다.

제15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삼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인은 여기서 제외한다.

제16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영업

제17조 조선은행은 아래의 업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어음, 기타 상업어음의 할인
2. 보통 거래하는 각종 회사·은행 또는 상인을 위한 어음 징수
3. 환(換), 화환(貨換)
4.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
5. 각종 예금, 당좌대월계정(當座貸越計定)
6. 금은화(金銀貨), 귀금속, 각종 증권의 보호 예탁
7. 지금은(地金銀)의 매매, 화폐 교환

앞 항 외에 영업의 상황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인증 받은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 조선은행은 제17조에 기재한 외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아래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출
2. 타 은행의 업무 대행

제19조 조선은행은 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조선은행은 본 법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를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제5장 은행권(銀行券)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과 종류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 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과 지점을 통해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金貨)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兌換券)과 교환할 수 있다. 단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착할 시간까지 그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와 같은 금액의 금화, 지금은(地金銀) 또는 일본은행 태환권을 비치해 그 지불에 대비해야 한다. 단 지금은 지불준비 총액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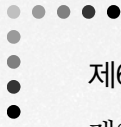
앞 항의 지불준비에 따른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별히 3천만 원에 한해 국채증권, 기타 인증 받은 증권 또는 상업 어음을 보증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 2개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권 발행이 필요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히 인증 받은 증권 또는 상업 어음을 보증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그 발행고에 대해 1년에 5/100를 내려가지 않는 비율로 발행세를 납부한다.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지역 내에서 무제한 통용된다.

제24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액과 지불준비와 관련한 매주 평균고표(平均高表)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훼손권 교환, 소각(銷却) 등의 절차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장 적립금 및 납부금

제26조 조선은행은 영업연도 마다 자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이익의 8/100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기 위해 이익의 2/100 이상을 적립한다.

제27조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이 불입자본에 대해 1년에 12/100 비율을 초과할 때에 조선은행은 그 초과액의 1/2을 정부에 납부한다.

제7장 정부의 감독 및 보조

제28조 정부는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9조 조선은행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조선은행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때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행권의 종류, 발행고, 대출할 인의 금액, 방법, 이자, 보험, 환수수료, 정화(正貨) 준비, 보증 준비에 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2조 조선은행의 영업상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조선총독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제33조 조선은행은 조선총독이 정한 대로 그 영업에 관한 제반 상황 및 계산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조선총독은 특별히 조선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35조 조선은행 감리관은 언제라도 조선은행의 금고, 장부, 제반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조선은행에 명령하여 영업상 제반 계산과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조선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단 의결 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6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 지주(持株) 이외의 주식에 대해 영업연도 마다 1년에 6/100의 비율까지는 정부 지주에 배당할 필요가 없다.

제37조 조선은행의 이익배당금으로 정부 지주(持株) 이외의 주식에 대해 영업연도 마다 1년에 6/100의 비율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는 창립 초기의 말일부터 5년을 기한으로 이에 달한 금액을 보조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 조선은행에 아래와 같은 사범(事犯)이 있으면, 총재 또는 총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는 이사를 100원 이상 1천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사범으로 이사의 분담업무와 관련된 때 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본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해 그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제39조 조선은행의 총재 또는 총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는 이사가 제11조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100원 이상 1천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0조 조선은행의 총재 또는 이사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백 원 이상 2천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1조 앞 3개 조항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206조 내

지 제208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조 본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구한국 1909년 법률 제22호에 따른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이라 부르고 한국은행은 본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은행이 한 행위는 조선은행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에 대해 이루어진 등기는 조선은행에 대해 이루어진 등기로 간주하여 등기부에 은행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44조 한국은행의 총재, 이사, 감사는 조선은행의 총재, 이사, 감사로 취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그 발행으로 간주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은행령(1912년 10월 24일 제령 제5호)

제1조 점포를 공개하고 증권의 할인, 환사업, 예금과 대출을 영업하는 곳을 은행이라고 한다.

제2조 은행업은 조선총독의 면허(免許)를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제3조 은행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통해 출자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제4조 제2조의 면허를 받은 다음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앞 항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5조 은행은 그 상호 안에 은행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이 아니면 그 명칭 안에 은행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은행은 매월 영업실제보고, 영업연도 마다 영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은행의 영업시간과 휴일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8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행에 그 영업 및 재산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관 공무원에게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총독은 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은행이 본령,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 제9조의 명령 또는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조선총독은 의무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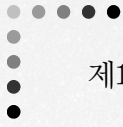
제11조 부실 신고를 하여 제2조의 면허를 받았을 때 조선총독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에 본점을 두는 은행은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조선총독은 청산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의 공탁을 명해 기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회사가 아닌 은행의 청산에 대해서는 합명회사(合名會社)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15조 은행이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해산을 명령받았을 때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16조 상법(商法)에 근거해 법원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할 때나 청산인이 없을 때에 조선총독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17조 조선총독이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은행에 보수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그 액수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8조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 아래의 경우 영업주, 그 대리인, 회사의 의무를 집행하는 임원, 조선 외에 본점을 가진 은행의 조선에서의 대표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면허를 받지 않고 은행영업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신고를 하여 제2조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운영하였을 경우

제20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조사 공무원의 심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아래의 경우 영업주, 그 대리인, 청산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조선 외에 본점을 가진 은행의 조선에서의 대표자를 10원 이상 1천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 그 행위에 대해 형을 부과할 때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1. 본령에 정해진 보고나 공고를 하지 않거나 그 보고나 공고 중
에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2. 제9조나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앞 항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206조 내지 제
20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제23조 본령에 정한 것 외에 은행의 단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
이 정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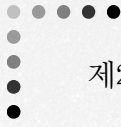
본령은 19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실제로 은행업을 운영하는 자는 본령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은행령시행규칙(1912년 10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제1조 개인으로서 은행령 제2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상호(商號)
2.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3. 자본금액
4.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5. 조선 밖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자가 조선에 지점을 개설하
는 경우에는 조선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제2조 회사로서 은행령 제2조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 회사령에 따른 허가서의 사본, 그 회사에 관한 상업등기부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개인으로 은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은행이 그 영업을 개시하면 즉시 조선총독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지점의 업무 개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 은행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기서 제외한다.

영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는 갑호(甲號)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영업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앞 항의 기간 내에 조선총독부 관보와 은행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매월 영업실제보고는 을호(乙號)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은행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앞 항의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은행의 휴일은 1월 1일, 대제일(大祭日), 기념일 및 일요일 그리고 그 영업지에 있는 정례휴일로 한다. 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전에 신문에 공고한 다음 휴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은행은 그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항과 관련한 등

기초본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9조 은행이 영업을 폐지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은행령 제16조와 제18조에 따른 청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앞 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은행의 청산인은 취직 후 지체 없이 은행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인은 매월 청산사무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산을 종결지으면 지체 없이 결산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갑호양식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본령에 따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 또는 조선에서의 대표자가 근무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을 경유해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주, 대리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조선 밖에 본점을 둔 은행의 조선에서의 대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제1조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한 경우

제14조 제3조 단서,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주, 대리인, 청산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조선 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조선에서의 대표자를 1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은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5. 농공은행령(1914년 5월 22일 제령 제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농공은행은 주식회사이다.

농공은행의 자본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각 주식의 금액은 20 원으로 한다.

제2조 농공은행의 영업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농공은행은 1영업구역 내에 1은행으로 한다.

제3조 농공은행의 영업구역 내에서 주로 농업 또는 공업을 운영하며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일본의 신민 또는 회사가 아니면 그 농공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단 일본의 신민 또는 회사가 상속 또는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주주는 앞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도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

제4조 정부 또는 농공은행의 영업구역 내 공공단체는 그 주주가 될 수 있다.

제2장 영업

제5조 농공은행은 아래 업무를 운영한다.

1. 20년 이내의 연부상환(年賦償還) 방법에 따른 부동산을 저당하는 대출
2.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따른 부동산을 저당하는 대출
3. 농업 종사자 또는 공업 종사자의 20명 이상 연대 채무에 대한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4. 공공단체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5. 지방금융조합, 어업조합,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업에 관한 법인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6. 조선의 산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조선의 산물 저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고업자가 발행하는 예증권(預證券), 질입증권(質入證券), 창하증권(倉荷證券)에 대한 대출 또는 지방금융조합이 발행하는 창하증권에 대한 대출
8. 조선에서 농업 또는 공업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주권 또는 회사 채권에 대한 대출
9. 환, 화물환
10. 어음 할인. 단 제6호, 제8호의 산물이나 증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제5조의 제1호, 제3호의 대출은 자금을 아래 사항에 사용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개간, 배수, 관개, 경작지 토질의 개량
2. 경작도로의 축조 또는 개량
3. 식림(殖林), 목축
4. 종묘(種苗), 비료, 기타 농업용 또는 공업용 원료의 구입
5. 농업용 또는 공업용 기구·기계·주차(舟車)·가축의 구입
6. 농업용 또는 공업용 건물의 축조 또는 개량
7. 앞의 각 호 외에 농업 또는 공업의 개량

제7조 농업은행은 예금을 하거나 지금은(地金銀), 유가증권의 보호예탁을 할 수 있다. 단 정기예금 이외의 예금 총액은 자본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예금 이외의 예금은 제5조, 제6조, 제10조의 자금을 충당하는 것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농공은행에서 저당을 설정할 때에는 모두 제일 저당이어야 한다. 단 구채(舊債)가 있는 경우에 농공은행에서 차입하는 신채(新債)로 그 구채를 상환하는 효과에 따라 신채의 제일 저당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9조 농공은행에서 저당으로 설정한 토지는 지속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담보해야 한다.

농공은행에서 저당으로 설정한 건물은 보험에 든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부동산을 저당하여 대출받는 금액은 농공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의 1/3 이내로 한다.

제11조 연부금(年賦金)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여 해마다 일정평등한 상환액을 정해야 한다.

앞 항의 상환액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대출금의 일부상환의

경우에는 그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금의 연부상환(年賦償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거치연한을 정해야 한다. 단 그 연한 동안의 이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13조 연부상환 방법으로 차입한 채무자는 상환기간 전에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 농공은행은 정관이 정한 대로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채무자는 차용금의 1/5 이상을 상환할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저당물 일부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잔액에 대해 차용금의 1/5 이상을 상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5조 농공은행은 연부금(年賦金)의 불입을 지연한 채무자에게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농공은행은 저당물의 가격이 감소하여 대출금 상환잔액에 대해 제10조의 비율에 부족분이 생기면 증저당(增抵當)을 청구하거나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대출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앞 항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때 농공은행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저당부동산을 법령에 따라 수용하게 되었을 때 농공은행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수용의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상응하는 부동산을 저당할 때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수용이 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머무를 때에는 그 부동산 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앞 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채무자가 대출 목적에 반하여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 농공은행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무담보로 차입을 한 공공단체 기타 법인이 연부금(年賦金), 정기 상환금, 이자불입을 지연하거나 기한 전의 상환청구에 불입을 지연할 경우에 농공은행은 그 법인의 감독관청에 불입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감독관청이 앞 항의 청구를 받아들일 때는 공공단체, 기타 법인에 명령하여 연체금과 지연이자를 불입해야 한다.

제20조 농공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농공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할 수 있다.

제22조 농공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다른 은행과 ‘코레스펀던스(correspondence)’를 체결할 수 있다.

농공은행은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 농공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공공단체를 위해 그 금전출납을 취급할 수 있다.

제24조 농공은행은 본령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3장 농공채권(農工債券)

제25조 농공은행은 자본금 1/4 이상을 불입한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5배에 한해 농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연부상환 대출금 총고에서 제21조의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농공채권은 권면금액을 5원 이상으로 하여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단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으로 할 수 있다.
- 농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1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6조 농공채권의 거치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상환기한은 20년 이내로 한다.
- 제27조 농공은행은 권면금액 20원 이하의 농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앞 항의 경우에는 회사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농공채권에는 상호(商號)와 상법 제173조 제2호, 제4호, 제6호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상법 제204조의 3 제1항의 기간은 농공채권의 매출기간 만료일부 터 이를 계산하여 그 등기해야 할 사항은 매출기간 내에 농공채권의 매상총액과 상법 제173조 제4호, 제6호에 기재한 사항으로 한다.
- 매출방법에 따라 농공채권을 발행한 경우의 회사채 등기 신청서에는 매출기간 내에 농공채권의 매상총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28조 농공은행은 매출방법에 따라 농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출기간 및 상법 제20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제29조 농공은행은 농공채권 차환(借換)을 위해 잠시 제2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않고 저리의 농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추첨을 통해 그 발행권면액에 상응하는 구농공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 제30조 농공은행은 연부상환 대출금의 상환고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추



첨을 통해 그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제31조 농공은행은 연부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약속된 금액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제30조의 상환과 같은 시기에 추첨을 통해 연체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제32조 농공은행은 연부상환 대출금의 기한 전에 상환받는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금액을 한도로 농공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수 있다.

제33조 농공채권을 모조(模造)한 경우 통화와 증권모조 단속법에 근거해 적용한다.

제4장 준비금

제34조 농공은행은 영업연도마다 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이익의 8/100 이상,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기 위해 이익의 2/10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35조 조선총독은 농공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6조 농공은행의 정관 변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7조 농공은행이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공은행에 명령해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농공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다.

제39조 본령에 정한 것 외에 농공은행의 영업 단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 아래의 경우 농공은행 대표를 10원 이상 1천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인가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나 할
인한 경우
 3.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하거나 제7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을 사용한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한 경우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거
나 제45조 제2항의 금지를 위반해 영업을 한 경우 또는 영업구
역 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해
농공채권을 발행한 경우
 7. 제29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해 농공채권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해 이익금을 처분한 경우
 9. 제37조 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10. 본령에 기초해 발하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앞 항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206조, 제208조
의 규정에 근거해 적용한다.



<부칙>

제41조 본령은 19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2조 구령(舊令)에 따라 설립한 농공은행은 본령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본령 시행 때 실제로 농공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에 그 주식 보유를 막을 수 없다.

제44조 농공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본령 시행 후 3년에 한해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르지 않고 농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5조 농공은행은 당분간 보통은행 업무를 계속 겸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전에 예고하여 앞 항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 농공은행은 정부가 인수한 주식에 대해 당분간 조선총독이 정한 대로 이익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6. 조선식산은행령(1918년 6월 7일 제령 제7호)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식산은행은 주식회사이며 그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2조 조선식산은행의 자본금은 1천만 원으로 하고 이를 20만 주로 나누어 한 주의 금액을 50원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제3조 조선식산은행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백년으로 한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조선식산은행의 주권(株券)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국신민 또는 제국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아니면 조선식산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제5조 정부 또는 공공단체는 조선식산은행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제2장 중역

제6조 조선식산은행에 대표이사 1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둔다.

제7조 대표이사는 조선식산은행을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관리한다.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 중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대표이사가 결원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조선식산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선식산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5년이다.

이사는 5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2배수 후보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감사는 3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이다.

제9조 대표이사와 이사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다른 직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여기서 제외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0조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한 시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1조 임시주주총회는 임시로 필요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2조 감사 전원 또는 자본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그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앞 항의 요청을 받아들인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 주주의 의결권은 한 주에 하나로 한다. 단 11주 이상은 10주 증가할 때마다 하나를 더한다.

제14조 주주는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인은 여기서 제외한다.

제15조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영업

제16조 조선식산은행은 아래의 업무를 운영한다.

1. 30년 이내의 연부상환(年賦償還)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
2.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따라 어업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단을 담보로 하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대출
4. 농업 종사자 또는 공업 종사자 20인 이상이 연대하여 채무를 진 자에 대한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5. 공공단체에 대한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6. 지방금융조합, 어업조합,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업과 관련한 법인에 대한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무담보대출
7. 조선의 산물 또는 조선의 산업상 필요한 화물을 저당한 대출
8. 국채증권 또는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을 저당한 대출
9. 환, 화물환
10. 공공단체의 채권 또는 조선에서 식산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회사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

11. 신탁의 의무

앞 항에 기재한 대출로 1년 이내의 것은 어음할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조선식산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지금은(地金銀), 유가증권의 보호 예탁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 이외의 예금은 제16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조선식산은행에서 저당을 넣을 때에는 모두 제일 저당이어야 한다. 단 구채(舊債)인 경우에 조선식산은행에서 차입하는 신채(新債)를 통해 그 구채를 상환하는 효과에 따라 신채의 제일 저당으로 해야 할 때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19조 조선식산은행에서 저당으로 넣는 토지는 영속적인 확실한 수익이 전망되는 것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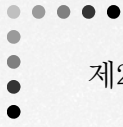
조선식산은행에서 저당으로 넣는 건물은 보험에 들어있는 것에 한한다.

제20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어업권, 재단을 저당으로 대출하는 금액은 조선식산은행에서 감정된 가격의 2/3 이내로 한다.

제21조 연부상환 방법으로 차입한 채무자는 상환기한 전에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에 조선식산은행은 정관에 정한대로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채무자는 차용금의 1/5 이상을 상환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저당물 일부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잔액에 대해 차용금의 1/5 이상을 상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23조 조선식산은행은 연부금의 불입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조선식산은행은 저당물의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상환 잔액에 대해 제20조의 비율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증저당(增抵當)을 청구하거나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대출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앞 항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식산은행은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출금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무담보로 차입을 한 공공단체 기타 법인이 연부금, 정기상환금, 이자의 불입을 지연하거나 기한 전의 상환청구에 대해 불입을 지연한 경우에 조선식산은행은 그 법인의 감독관청에 불입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감독관청이 앞 항의 청구를 받으면 공공단체 기타 법인에 명령하여 연체금과 지연이자를 불입하게 해야 한다.

제26조 조선식산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조선총독이 인가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다른 은행 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대행을 한 경우에 조선식산은행은 채무자를 위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제28조 조선식산은행은 공공단체를 위해 그 금전출납을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 조선식산은행은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5장 채권

제30조 조선식산은행은 불입자본금액의 10배에 한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연부상환 대출금 총고, 정기상환 대출금 총고, 그리고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응모하거나 인수한 채권 및 회사채 권 현재고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1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채권은 권면금액을 10월 이상으로 하여 무기명식으로 한다. 단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조선식산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상환 방법을 정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조선식산은행은 권면금액 20원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정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는 회사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상호(商號)와 상법173조 제2호, 제4호, 제6호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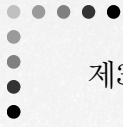
상법 제204조의 3 제1항의 기간은 채권의 매출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를 계산하여 그 등기한 사항은 매출기간 내의 채권 매상총액과 상법 제173조 제4호, 제6호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매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의 회사채 등기 신청서에는 매출기간 내의 채권 매상총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조선식산은행은 매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상법 제203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기재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35조 조선식산은행은 채권차환(債券借換)을 위해 잠시 제30조의 제한에 따르지 않고 저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구채권(舊債券)을 상환해야 한다.



제36조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채권의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다.

제37조 채권 원금의 청구권은 1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제38조 채권의 모조(模造)에 관해서는 통화와 증권모조처벌법에 근거해 적용한다.

제6장 준비금

제39조 조선식산은행은 매 영업한도 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이익의 8/100 이상,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기 위해 이익의 2/10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7장 감독

제40조 조선총독은 조선식산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1조 정관의 변경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42조 조선식산은행이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선식산은행에 명령하여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제44조 조선총독은 조선식산은행의 업무에 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5조 조선총독은 조선식산은행 감리관을 두어 조선식산은행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제46조 조선식산은행 감리관은 언제라도 조선식산은행의 금고, 장부,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 감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조선식산은행에 명해 영업상의 손익과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조선식산은행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7조 아래의 경우 조선식산은행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이사를 1백 원 이상 1천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사의 분장업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를 과태료에 처하는 것 역시 같다.

1.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10조,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3. 제16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나 할인한 경우
4.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을 사용한 경우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한 경우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한 경우
7.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항,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8.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 9.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 10. 제42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44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48조 조선식산은행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20원 이상 2백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9조 제48조의 과태료에 관해서는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206조, 제2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제50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51조 조선총독은 설립위원을 임명하고 조선식산은행 설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 제52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3조 설립위원은 농공은행령(農工銀行令)에 따라 설립된 농공은행의 주주에게 5원 불입의 주식 4주, 10원 불입의 주식 2주, 20원 불입의 주식 1주에 대해 각 조선식산은행의 주식 한 주를 할당해야 한다. 단 정부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는 5주에 대해 조선식산은행 주식 2주를 할당해야 한다.
- 설립위원은 앞 항의 할당을 위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일정 기간 농공은행 주식의 명의서환(名義書換)을 정지할 수 있다.
- 제54조 제53조 제1항의 할당을 하는 경우에 설립위원은 농공은행의 주식에 대해 1개월 내에 주권을 설립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55조 설립위원이 제54조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주주가 주권(株券)을 제공한 경우에 할당에 부합하지 않는 주가 있다면 그 주도 마찬가지로이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그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권의 번호를 공고해야 한다.

제56조 설립위원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여 대금을 교부해야 한다.

농공은행령 제3조의 규정은 앞 항의 주식 매수인에게 적용한다.

제57조 설립위원은 제56조의 주식 매수인에게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주식을 할당해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할 수 없는 주식은 조선총독이 정한대로 농공은행에서 이를 소각해야 한다.

제58조 농공은행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해야 하는 조선식산은행의 주식과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대금의 상위에 존재한다.

제59조 설립위원은 조선식산은행의 주식총수에서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받아야 할 주식을 공제한 잔여 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상법 제126조, 제130조의 규정은 앞 항의 모집에 대해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제1회 불입금액은 각 주식에 대해 20원으로 한다.

주식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정관 인가의 연월일
2. 상법 제120조 제1호, 제4호, 제7호에 기재된 사항
3. 본점의 소재지
4. 존립시기



5. 제1회의 불입금액
6. 농공은행의 주주에게 할당한 주식의 수와 그 비율
7. 설립비용

제60조 제59조에 따라 모집한 주식의 총수에 대해 제1회 불입이 있으면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식에 대해 정부 소유의 주식은 전액, 그 이외의 주식은 제1회 불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한 각 주에 대해 제1회 불입이 있으면 설립위원회는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창립총회는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할당을 받은 농공은행의 주식, 그리고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한 주식의 인수인으로 자본의 반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의한다.

제13조, 제14조, 상법 제132조, 제156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 4 규정은 앞 항의 창립총회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제62조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 보고하기 위해 검사역(檢査役)을 선임해야 한다.

제63조 창립총회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립초의 이사 후보자 선출과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64조 조선식산은행은 창립총회를 종료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위원회는 조선식산은행이 성립하면 즉시 그 업무를 조선식산은행 대표이사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5조 농공은행령에 따라 설립된 농공은행은 조선식산은행 성립일에 해산하고 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조선식산은행에서 승계한다.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앞 항의 경우에 조선식산은행 대표이사는 농공은행에 대해서 해산등기를 하고 조선식산은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상법 142조의 규정은 앞 항의 경우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제66조 제65조 제1항의 경우에 농공은행령에 따라 발행한 농공채권은 본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으로 간주한다.

제67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식산은행이 승계한 부동산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해서 등기부 또는 증명부의 농공은행 명의를 조선식산은행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8조 조선식산은행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보통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9조 조선식산은행은 정부 소유의 주식에 대해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제70조 농공은행령은 조선식산은행 성립일을 기해 폐지한다.

7. 지방금융조합규칙(1907년 5월 30일 칙령 제33호)

제1조 지방금융조합은 농민의 금융을 완화하고 농업의 발달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제2조 지방금융조합은 1군이나 여러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조직한다. 단 그 설립구역은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지방금융조합의 책임은 그 재산을 한도로 한다.

제4조 지방금융조합은 아래 업무를 경영한다.

1. 조합원에 대해 농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부



2. 조합원을 위해 생산된 곡류를 창고에 보관

앞 항에 열거한 것 외에 지방금융조합은 아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해 종묘, 비료, 농구 등 농업상의 재료 분배나 대여

2. 조합원을 위해 생산물을 위탁판매

제5조 앞 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금융조합은 군아(郡衙) 부속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지방금융조합에 조합장 1인과 평의원 약간을 두되 조합원이 이를 선거한다.

제7조 지방금융조합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약간의 금액을 하부(下付)할 수 있다.

앞 항 하부금에 대해 탁지부대신은 그 추천한 이사 1인으로 조합의 상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8조 지방금융조합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각 조합원에게 매년 2환 이하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지방금융조합은 업무의 필요에 응해 기채(起債)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금융조합의 이익은 조합의 공동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11조 지방금융조합의 업무성과 손익계산은 매년 일회씩 조합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지방금융조합의 업무는 탁지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탁지부대신은 감독관으로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게 한다.

제13조 지방금융조합 설립에 관한 방법은 탁지부대신이 정한다.

<부칙>

제14조 본칙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8. 지방금융조합령(1914년 5월 22일 제령 제22호)

제1장 총칙

제1조 지방금융조합은 농민의 금융자금조달 능력을 도와 경제 발달을 꾀하는 사단법인이다.

제2조 지방금융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가진 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독립된 생계를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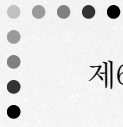
제3조 지방금융조합의 주소는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지방금융조합의 명칭에는 지방금융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지방금융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금융조합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지방금융조합은 아래의 업무를 운영한다.

1. 조합원에게 농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
 2. 조합원을 위해 예금을 하는 일
 3. 조합원을 위해 종자·종묘·비료·농기구, 기타 농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분배하는 일
 4. 조합원에게 농기구 기타 농업에 필요한 재료를 대부해 주는 일
 5. 조합원의 위탁에 따라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일
 6. 조합원을 위해 그 생산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이에 대해 창하증권(倉荷證券)을 발행하는 일
 7.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일
- 앞 항의 창하증권은 상법 중 창하증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적용한다.



제6조 지방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조합원이 아닌 자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방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농공은행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매개할 수 있다.

제8조 지방금융조합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상의 여유금은 일시적으로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을 매입하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는 것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방금융조합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물건을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11조 지방금융조합은 본령에 기재하지 않은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단 조선총독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방금융의 조절에 관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금융조합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본령에 정한 것 외에 지방금융조합의 업무 단속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장 설립

제13조 지방금융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만들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정관에는 본령에 규정한 것 외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설립자가 여기에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출자불입 방법
6. 제1회 불입 금액
7. 준비금 적립 방법
8.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5조 지방금융조합의 설립을 허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선총독은 이미 설립된 조합의 업무구역과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한정할 수 없다.

제17조 출자 한 구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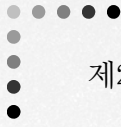
제18조 지방금융조합이 그 설립 허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조합원이 제1회 불입을 마쳤어야 한다.

제19조 제18조의 불입이 있으면 2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아래의 사항을登記해야 한다.

1. 제1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에 기재한 사항
2. 주된 사무소
3. 출자 총구좌수와 불입한 출자의 총액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앞 항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2주 내에登記해야 한다.

단 앞 항의 제3호 사항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연도종료 후 1개월 내에登記할 수 있다.



제20조 제19조의 등기 전에는 조합의 설립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통해 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1조 행정구획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획의 명칭은 이를 당연히 변경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 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방금융조합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해야 한다.

앞 항의 통지가 있을 경우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업무구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이를 적용한다.

제22조 민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은 지방금융조합에 이에 근거해 적용한다. 단 민법 제48조 중 1주일이라는 것을 2주일로 한다.

제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조합원은 출자 한 구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제24조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 조합원은 불입할 출자에 대해 상쇄(相殺)를 통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조합원은 조합의 승낙이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자로 지분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질권(質權)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7조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8조 지분을 양도받는 자는 그 지분에 대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 조합원은 총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목적과 그 소
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앞 항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2주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0조 조합원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그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의 취소를 지방장
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관리(管理)

제31조 지방금융조합에 조합장 1명, 이사 1명, 감사 2명 이상 및 평의원
7명 이상을 둔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앞 항의 선임은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이사는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감사와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조합설립 때의 조합장과 감사는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는 조합장, 기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3조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와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에 최종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조합장과 감사의 선임은 총조합원이 과반수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35조 조합장은 이사와 공동으로 지방금융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에게 행
사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그 효력이 있다.



조합장은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조합장 유고시 이사가 이를 대신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는 지방금융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37조 감사는 지방금융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지방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한다.

평의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본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결의한다. 그 결의 방법은 정관이 정한대로 따른다.

평의원은 조합의 업무에 관해 조합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제39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 정한 시기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0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1조 총회 소집은 적어도 10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리고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 총회에서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한다.

제43조 총회의 결의는 본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제45조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대리인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이사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1주일 전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

업보고서, 잉여금처분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해당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앞 항에 게재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조합장과 이사는 제46조 제1항에 게재된 서류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앞 항의 승인을 얻으면 2주 내에 그 서류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48조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의 규정은 앞 항의 결의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제49조 지방금융조합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명부를 해당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앞 항에 게재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조합원 명부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각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2. 각 조합원의 출자 구좌수
3. 출자 각 구좌에 대해 불입한 금액과 그 불입 연월일
4. 출자 각 구좌의 취득 연월일

제51조 지방금융조합의 사업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52조 지방금융조합은 손실을 메운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처분할 수 없다.

제53조 지방금융조합에 결손보전준비금으로 그 출자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 1/4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잉여금은 불입출자액에 따라 연 7부 이하의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그 출자의 불입을 마칠 때까지는 배당할 잉여금은 불입해야 한다.

제54조 지방금융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제55조 조합장과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지되지 않을 때에 한해, 또는 종류나 특정 사항에 대해 타인에 대신할 수 있다.

제56조 지방금융조합은 조합장, 이사 또는 제55조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행사하는데 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장 가입 및 탈퇴

제57조 조합원의 가입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조합원이 된 자는 정관이 정한대로 즉시 제1회 출자불입을 해야 한다.

제58조 조합원은 사업연도 말에 탈퇴를 할 수 있다. 단 3개월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

제59조 조합원은 아래의 사유에 따라 탈퇴한다.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제명

제60조 제명 사유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제명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1조 탈퇴한 조합원은 정관에 정한 대로 그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의 반환은 탈퇴원인과 무관하게 불입출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62조 지분을 계산하는데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탈퇴한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그 금액을 불입해야 한다.

제63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조합은 그 지분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64조 지방금융조합은 조선총독과 지방장관이 감독한다.

제65조 감독관청은 언제라도 지방금융조합에게 그 업무와 재산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 감독관청은 지방금융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따라 조합에 대해 재산의 공탁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7조 지방금융조합이 정관, 본령,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조합의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은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조합장과 감사의 재선출을 명하거나 조합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에 조선총독은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68조 지방금융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존립시기의 만료 또는 사유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합병
4. 조합원의 결산
5. 파산
6. 제67조 제2항의 명령

제69조 제34조의 규정은 해산과 합병 결의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앞 항의 결의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제70조 지방금융조합이 제68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로 인해 해산한 때에는 2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

제71조 지방금융조합이 합병결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 도착일로부터 2주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금융조합은 앞 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진술한 내용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채권자가 제71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는 지방금융조합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합병을 할 수 없다.

제73조 지방금융조합이 합병을 한 경우 2주 내에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등기를 해야 한다.

제74조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5조 지방금융조합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은 조합

장, 이사, 채권자의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다.
앞 항의 경우에 조합장과 이사는 즉시 파산 선고를 요청해야 한다.
제76조 해산한 지방금융조합의 채무를 다 갚고 남은 재산은 조합원의 불
입출자액에 따라 분배한다.

제8장 청산

제77조 지방금융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이나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
고 본령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제78조 지방금융조합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조선총독은 청산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공탁을 명해
기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9조 청산인은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제80조 청산인은 취임 후 2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과
주소 등기를 해야 한다.

앞 항의 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청산인은 2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제81조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
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를 소집해 이를 제출하여 그 승
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82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
하지 않으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3조 청산 업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를 소집해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84조 청산이 종료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의 전말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5조 제43조, 제45조, 민법 제73조, 제78조, 제81조의 규정은 지방금융조합의 청산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제9장 등기

제86조 지방금융조합의 등기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청, 출장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87조 등기소에 지방금융조합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88조 제19조 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제89조 주된 사무소의 이전 또는 등기사항 변경의 등기 신청서에는 그 이전이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0조 조합해산의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 또는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합병에 의한 해산의 등기신청서에는 앞 항의 사항 외에 제71조 제2항의 최고(催告)를 한 일, 또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1조 지방금융조합이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

제92조 지방금융조합에 관해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93조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141조,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의 2, 제151조, 제151조의 4, 제151조의 6, 제157조, 제175조, 제178조의 규정은 지방금융조합의 등기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단

사법대신(司法大臣)이란 조선총독, 지방재판소장이란 지방법원장을 말한다.

제10장 벌칙

제94조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금융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청산인을 5원 이상 5백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등기 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부정 등기를 하였을 경우
3. 관청 또는 총회에 대해 부실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3조, 제71조, 제7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6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기재된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정 기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6. 제47조, 제65조, 제8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공고하는 일을 태만히 하거나 부정 공고를 한 경우
8. 청산의 경우 제81조, 제83조, 민법 제79조,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채권신청기간 만료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9. 감독관청의 조사를 거부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담당 관리의 심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0. 감독관청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96조 비소송사건 절차법 제206조, 제208조의 규정은 제95조의 과태료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부칙>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구령(舊令)에 따라 설립한 지방금융조합은 본령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 항의 지방금융조합은 본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정관을 개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준해 출자의 불입 및 등기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재판소가 앞 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9. 동양척식주식회사법(1908년 8월 26일 법률 제22호)

제1장 총칙

제1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한국에서 척식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하고, 그 본점을 경성에 둔다.

제2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본은 1천만 원으로 하되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3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한일 양국인에 한해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제4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본증가는 주금(株金) 전액의 불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존립시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백 년으로 하
되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일
본국 동경, 기타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7조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해 잠시 동안 일본국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
를 준용한다.

제2장 역원

제8조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총재 1인, 부총재 2인, 이사 4인 이상, 감사 3
인 이상을 둔다.

제9조 총재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리(總理)한다.

부총재는 총재가 유고(有故)한 때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가 궐원이
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한다.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를 보조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분
장(分掌)한다.

감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 총재는 일본인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가 이를 임명한다.

부총재는 1인은 한국인으로 1인은 일본인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그 인원 중 적어도 2/3는 일본인으로 하고 기타는
한국인으로 한다.

부총재와 이사 중 한국인은 정부가 이를 임명하며, 일본인은 일본
국 정부가 이를 임명한다. 단 이사의 임명은 주주총회에서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각 2배의 후보자를 선거하게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선거한다.
총재와 부총재,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제11조 총재와 부총재, 이사는 다른 직무나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정부의 허가를 받은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영업

제12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아래의 업무를 경영한다.

1. 농업
2.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와 대차(貸借)
3.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영과 관리
4. 척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築造)와 매매, 대차
5. 척식을 위해 필요한 한일 이주민의 모집과 분배
6. 이주민과 한국농업자에 대해 척식상 필요한 물품의 공급, 그 생산이나 획득한 물품의 분배
7. 척식상 필요한 자금의 공급

제13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부대사업으로 수산업과 기타 척식상 필요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 제7호의 자금공급은 아래 방법에 의해 행한다.

1. 한일 이주민에 대해 25년 이내의 연부상환 방법에 의한 이주비의 대부
2. 이주민과 한국농업자에 대해 15년 이내의 연부상환 방법에 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이주민과 한국농업자에 대해 5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
4. 이주민과 한국농업자에 대해 생산이나 획득한 물품을 담보로 하는 대부

5.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3년 이내의 정기상환 방법에 의한 대부
앞 항 제1호의 대부에서는 그 방법과 조건을 정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2호, 제5호의 대부금총액은 불입자본액과 사채미상환액
합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금액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서 감정한 가격 2/3 이내로 한다. 단 앞 조 제1항 제1호의 대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에 대해서는 제1순위의 담보됨을 필요
로 한다.

제17조 대부금의 연부상환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잉치(仍置)연환을 정
한다.

제18조 연부금(年賦金)은 원금과 변리를 합하여 계산하고 해마다 일정하
고 평등한 상환액을 정한다. 단 잉치연환 간의 변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연부상환 방법으로써 차입한 채무자는 상환기한 전에 차용금의 전
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를 담당하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율
(率)에 의해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아래 경우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대부 목적을 위반하여 대부금을 사용했을 때
2. 채무자가 연부금의 불입을 지연하여 최고(催告)를 받도록 불입
을 하지 않았을 때
3. 담보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가 공용(公用)으로 수용될 때. 단



채무자에게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부동산을 증담보(增擔保)로 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 항 제3호의 경우 그 수용이 일부에 그칠 때는 상환 요구도 그 비례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담보물 가격이 감소하여 대부금 상환잔액에 대해 제15조의 비례에 부족할 때는 증담보를 요구하거나 그 부족에 상당한 대부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앞 항 요구에 불응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영업상의 여유금은 일시 국채증권을 매입하거나 정부의 지정은행에 예치하는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영업상 필요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차입금을 할 수 있다.

제4장 동양척식채권

제24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불입자본액의 10배에 한해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본국 상법 제1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매회 그 금액, 조건과 발행, 상환방법을 정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수회로 나누어 불입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동양척식채권은 전액 불입 후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단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로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28조 동양척식채권의 소유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판제(辦濟)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사채(社債)를 차환(借換)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24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채 총액에 상당한 구(舊) 동양척식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 제30조 동양척식채권의 인치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상환기한은 30년 이내로 한다.
- 제31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동양척식채권의 매입과 소인(消印)을 할 수 있다.

제5장 준비금

- 제32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매 영업기에 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익의 8/100 이상을 적립하고, 이익배당의 평균을 얻기 위해 이익 2/10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제6장 감독과 보조

- 제33조 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제34조 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을 두고, 일본국 정부가 임명한 감리관과 공동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게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은 언제라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금고와 장부, 제반 문서·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명령하여 영업상 제반의 계산과 경황(景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은 주주총회와 기타 제반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정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36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결의나 역원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정부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역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역원으로서 감독관청이 명령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같다.

제37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익금을 처리할 수 없다.

제38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주규칙이나 기타 규정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8년간을 한정하고 매년 30만원을 매 영업기에 할당하여 일본국 정부가 보급을 받을 자로 한다. 단 매 영업기의 이익배당이 불입자본액에 대해 연(年) 8푼의 비율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급금 중에서 공제될 자로 한다.

제41조 이익배당이 불입자본액에 대해 연(年) 11조(條)의 비례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금액은 우선 이를 앞 조(條) 보급금의 상환에 충당해야 한다.

앞 항의 상환을 종료한 때는 초과금액은 그 반액을 특별적립금으로 한다.

제7장 벌칙

제42조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아래 사범(事犯)이 있을 때는 총재나 부총재의 직무를 행하거나, 대리하는 부총재를 1백환(圓) 이상 1천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그 사범이 부총재나 이사의 분담업무에 관계할 때는 부총재나 이사를 과료에 처함이 역시 동일하다.

1. 본법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그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
2.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업무를 운영했을 때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공급했을 때
4.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상의 여유금을 사용했을 때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했을 때. 단 제29조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양척식채권의 상환을 하지 않을 때
7. 제32조,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금을 처리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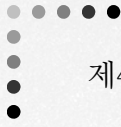
제43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총재나 부총재, 이사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20환 이상 2백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44조 정부는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일본국 정부가 임명한 설립위원과 공동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게 한다.

제45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만들어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제46조 설립위원은 주주 모집을 종료하면 주식가입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47조 설립인가를 받으면 설립위원은 지체말고 각 주(株)에 대해 제1회 불입을 하게 해야 한다.

앞 항의 불입이 있을 때 설립위원은 지체말고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8조 창립총회가 종결된 때 설립위원은 그 사무를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에 인계해야 한다.

제49조 제1기의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임명하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예에 따른다.

10. 회사령(1910년 12월 29일 칙령 제30호)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선 외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함에는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의해 조선에 지점을 설치할 때는 상법 중 일본에 지점을 설립한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제1조나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후 1년 내에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는 그 허가의 효력을 잃는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을 받아 앞 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근거해 발(發)하는 명령과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1조나 제2조의 허가를 받은 때는 조선총독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제1조나 제2조의 허가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었을 때 지점 설치의 허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회사는 해산한다.

제8조 제5조나 앞 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해산한 때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모두 회사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사가 아닌 것은 그 명칭 중에 회사로 보일 만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에 관한 본령과 조선총독부령에 규정하는 외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단 상법 중 일본이라 함은 조선, 외국이라 함은 조선 외를 말한다.

제12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의 설립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실한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자도 역시 같다.

제13조 회사의 의무를 집행하는役員이나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의 조선 대표자는 아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할 때
2. 부실한 신고를 하여 제2조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했을 때



4.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정지나 금지, 지점 폐쇄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했을 때

제14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본령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구 한국정부의 면허를 받아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본령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 항의 회사가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아무 종류에도 적합하지 아니 할 때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본령 시행 전에 상법에 의해 조선에서 설립된 회사는 본령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조선 외에서 설립된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이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조선에 존재하는 것은 본령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는 것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외국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회사령시행규칙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66호)

제1조 회사령 제1조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나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2. 회사의 종류
3. 회사의 상호나 명칭
4. 자본의 총액
5. 합명회사는 그 사원이 될 자의 이름과 주소, 출자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이름과 주소, 출자액
6. 주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인수할 주식수, 앞으로 받을 특별한 이익, 보수액,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목적으로 하는 자의 이름과 재산의 종류, 평가액, 이에 대해 제공할 주식수와 회사 부담으로 돌아갈 설립비용
7.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제2조 회사령 제2조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회사가 조선에 지점만 설립할 때는 조선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앞 조 제1호, 제4호에 정한 사항
2. 합명회사는 그 사원의 성명과 주소, 합자회사나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성명과 주소
3. 주식회사는 역원의 성명과 주소



4.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제3조 회사령 제1조나 제2조의 허가를 받은 회사가 제2조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과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조선에 지점만 설립하는 것이 앞 조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조선의 지점 소재지의 변경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회사에게 업무와 재산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회사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사의 성립이나 해산, 본점과 지점의 개설이나 폐쇄, 사업의 개시나 중지, 폐지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 회사령 제17조의 회사는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면허장과 정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이후의 경과
2. 업무와 재산 상황
3.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의 이름과 주소

앞 항의 회사는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6일 이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51조, 제107조, 제141조, 제242조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한다.

앞 항에 의해서 한 등기는 본령을 시행하는 날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회사령 제18조의 회사는 앞 조 제1항에 준해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한 등기는 본령에 의해 한 것

으로 간주한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앞 조 제2항에 준해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제8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회사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에서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 제6조 제1항에 준해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조선에 지점만 두는 것은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은 그 지점에 관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앞 항의 회사가 이미 한 등기는 본령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제6조 제2항에 준해 본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조선 밖에서 설립하여 조선에서 사업을 경영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본령을 시행하는 때에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외국에서 설립한 것을 제외하고 본령 시행일부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령 제2조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앞 항의 허가를 받은 회사는 허가일부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한 회사는 허부(許否)의 지령을 받기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기까지도 역시 같다.

제10조 본령에 의해 조선총독에게 제출할 서류는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을 경유해야 한다.

제11조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이나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의 조선 대표자는 아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제1호의 경우 회사 성립 전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나 발기인을 처벌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조나 제2조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2.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허위로 보고를 하고, 검사를 방해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을 때
3. 제4조 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4.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5. 제6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부칙>

본령은 회사령을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1920년 4월 1일 제령 제7호)

회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구령(舊令)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본령을 시행할 때 현존하는 것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령 시행 전 구령에 의해 한 행위는 조선민사령 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령(同令)에 의해 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업, 무진업(無盡業), 유가증권의 매매나 중립(仲立)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회사조직의 취인소(取引所)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

회사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회사에는 조선민사령 중 이에 유사한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령 제19조 제2항, 제20조에 규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

찾아보기

【ㄱ】

경찰범처벌규칙 31, 239
경찰사무 집행에 관한 협정서 18
경학원(經學院) 311, 312, 313
경학원규정 34, 311
경학원에 관한 건 34, 312
경학원의 원무(院務)에 관한 건 35, 313
고문 정치 17
교원심득 319
교원심득사항 36
교원심득에 관한 건 325
교육에 관한 칙어 315
구백동화 교환 처리 순서 37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37
기유각서 24

【ㄴ】

농공은행 346
농공은행령 39, 346

【ㄷ】

대한방침 16, 44

대한시설강령 16, 44
대한시설대강 60, 61
테라우치(寺內正毅) 223, 313, 314
도사무분장규정 144
동양척식주식회사 350, 380
동양척식주식회사법 39, 380

【ㄹ】

문관임용령 28, 183
문무관 서위·진계 내칙 207

【ㅁ】

법관임용령 188
법례 120
법례를 조선에 시행하는 건 120
보안규칙 30, 247
보안법 31, 246
보통학교규칙 36

【ㅂ】

4심제 24
사이토(齋藤實) 224

사찰령 34, 305
 사찰령시행규칙 34, 306
 삼림령 33, 282
 삼림령시행규칙 285
 삼림법 33
 서위서훈내신취급수속 221
 서위조례 225
 서위훈내신에 관한 건 222
 서훈내칙 210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규칙 201
 시학규정 166
 신문지규칙 31, 257
 신문지규칙 중 개정 261, 263
 신문지법 31, 252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 256

【ㅇ】

약속어음조례 38
 어음조합조례 38
 영림창(營林廠) 287
 왕궁가에서 조선의 가문으로 들어간 자
 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궁가로 들어
 간 자에 관한 건 70
 왕공족보규정 72
 왕공족으로 조선의 가문에 들어간 자와
 조선의 가문을 떠나 왕궁가로 들어간
 자에 관한 건 69
 은행령 38, 340

은행령시행규칙 343
 이강과 이희를 공으로 하는 건 116
 이왕직관제 20, 67
 임시은사금 배여(配與)에 관한 건 233
 임시은사금관리규칙 235
 임시은사금의 수지에 관한 규정 236
 임적조사사업 33

【ㅈ】

재판소구성법 167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사무에 관
 한 협정 59
 재한국 일본신민에 대한 경찰사무집행에
 관한 협정서 59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건
 116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268
 제1차 한일협약 51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을사조약) 17,
 23, 56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16, 18, 23, 51, 58, 60
 제령공포식 119
 조선 귀족에 관한 규정 93
 조선경찰상여규정 231
 조선교육령 35, 316
 조선교육령 공포에 즈음하여 조선교육의
 본의에 관한 건 36

조선군인에 관한 건 162
 조선귀족령 20, 89
 조선귀족세습재산령 101
 조선귀족세습재산령시행규칙 102
 조선귀족에 관한 심사위원회규정 93
 조선귀족의 서위에 관한 건 226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 308
 조선식산은행 354
 조선식산은행령 39, 354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21, 118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21
 조선에 재주하는 귀족에 관한 건 92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두는 건 117
 조선에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 118
 조선에서 이왕직의 사무와 조선에 재근
 하는 이왕직 직원에 관한 건 69
 조선은행 38, 334
 조선은행법 334
 조선인 관리의 서위에 관한 건 210
 조선인 관리의 정례서훈에 관한 건 222
 조선인 관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186
 조선인 시보와 견습에 관한 건 195
 조선인의 조선총독부판사 및 검사의 임
 용에 관한 건 29
 조선인주임관 및 관임관의 증치(增置)에
 관한 건 185
 조선인관임문관시험규칙 195
 조선임야조사령 33, 294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297
 조선총독부 223, 224, 231, 233, 235,
 236, 239, 266, 273, 280, 285, 297,
 301, 306, 311, 313, 319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의 명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건 112
 조선총독부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의 별
 칙에 관한 건 122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25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사무분장규정 149
 조선총독부경찰관서 폐지에 관한 건 153
 조선총독부관제 127
 조선총독부관제 중 개정 건 129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특별임용령
 185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관임관특별임용
 령 191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131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 137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실무수습 및 시험
 규칙 198
 조선총독부순사부장시험규정 197
 조선총독부순사부장에 관한 건 192
 조선총독부순사부장에 관한 건 개정 193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191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 32
 조선총독부재판소검사국사무장정 177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장재판소서기특별

임용령 187
 조선총독부재판소직원의 임용에 관한 건
 190
 조선총독부중추원관계 179
 조선총독부중추원관계 중 개정 건 180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181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 중 개정
 건 181, 182
 조선총독부중추원의사규칙 182
 조선총독부지방관관계 139
 조선총독부판사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190
 조선총독부형무소장간수장특별임용령
 187
 조선태형령 264
 조선태형령 폐지의 건 267
 조선태형령시행규칙 266
 조선헌병조례 26
 중추원 222
 지방금융조합규칙 39, 365
 지방금융조합령 39, 367
 집회취체령 264

【*】

1910년 제령 제1호에 의한 명령의 구분
 에 관한 건 119
 1914년 조선총독부내훈 제29호 적용방
 법 건 223

총독부지방관관계 26
 추밀원 211
 출판규칙 31, 251
 출판법 249

【ㄷ】

토지수용령 32, 269
 토지수용령시행규칙 32, 273
 토지조사령 32, 277
 토지조사령시행규칙 280
 통감부 247, 251, 257, 261, 263, 304
 통감부 경찰관서관제 26
 통감부 및 이사청관계 23, 123
 통감부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이 발(發)하
 는 명령에 관한 건 121
 통감부경찰관서관제 146
 통감부영립창관계 33
 통감부재판소령 171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 176
 통감부판사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 189

【표】

포교규칙 35, 301
 포장조례 226
 포장조례취급수속 229
 포츠머스 강화조약 17

【㉞】

하세가와(長谷川好道) 223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 24
한국 연해 및 하천 항행에 관한 약정서 17, 54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각서 19
한국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 17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64
한국병합기념장제정의 건 29, 230
한국병합에 관한 건 60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20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62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 154
한국은행 38, 327
한국은행조례 327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 115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부르는 건 117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 26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각서 63
한국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 52
한일의정서 16, 43
한일합병조약 20, 64
한일협약규정실행에 관한 각서안 18
헌병보규정 158

헌병보조원규정 155
헌병보조원규정 중 개정 건 158
헤이그 밀사사건 18
화족령 85
화족세습재산법 96
화폐조례 실시에 관한 건 37
황실전범 79
회사령 40, 388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40, 394
회사령시행규칙 391
훈령 21
훈장수여수속의 건 224

